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현옥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397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5. 22.

발 의 자 : 현옥순 의원 외 14명

1. 개정이유

-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
-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추가하고, “안산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변경함 (안 제6조)
-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함 (안 제7조 ~ 제9조)
-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해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6. 현행조례 : 붙임4

7. 예산수반사항 : 붙임5 (비용추계서)
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0. 5. 15. ~ 5. 20.(5일간)

9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6 (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1】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 자살예방시책”을 “자살예방”으로, “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”을 “생명존중문화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수립과 시행
2.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3.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
4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평가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조(현행의 제3조)의 제목 “(주민의 권리와 의무)”를 “(시민의 권리와 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주민”을 “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복지시설, 학교, 사업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”를 “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”로 한다.

제3조(현행의 제4조)제1항 중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4조(현행의 제5조)제1항 중 “시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”를 “시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지역사회”를 “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”로 한다.

제6조(현행의 제7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시장은 다음”으로, “시장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”를 “안산시자살예방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안산시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”을 “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

제8조의 제목“(자살예방·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)”를“(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당연직 위원은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, 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원
2.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
3. 안산시 관할 경찰서, 교육기관 등 담당자

4. 의료 및 인권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5.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.
 -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⑥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자살예방을 위한 홍보)”를“(생명존중문화 조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”를 “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”으로, “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”를 “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하고,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하고, 제14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5)

[붙임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<u>안산시 자살예방시책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<u>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본정책) ① <u>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,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,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안산시민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자살예방</u> ----- ----- ----- <u>생명존중문화 조성</u> ----- ----- <u><삭 제></u></p>

제3조(주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주민은

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복지시설, 학교, 사업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주민의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

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제2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안산시

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-----

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-----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시민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) ① 시

장은 -----

② -----

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

6.·7. (생략)

제6조 (생략)

<신설>

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
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산시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안산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---

6.·7. (현행과 같음)

제5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제7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

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
정책의 수립과 시행

2.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

구축

3.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

4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평가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제6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

다음 ----- 안산시 자살예방센터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

와 같음)

② ----- 안산

시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)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자살예방 상담·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4.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신 설>

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제3항-----. -----.

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, 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원
2.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
3. 안산시 관할 경찰서, 교육기관 등 담당자
4. 의료 및 인권분야의 전문지식과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관·단체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살예방을 위한 홍보) 시장은

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⑥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생명존중문화 조성) ① -----

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유해정보 등의 차단)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생 략)

제13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)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·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, 이를 부당하게

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---

-----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 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-----

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11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<삭 제>

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 · 제15조 (생략)

제16조 (생략)

제12조 · 제13조 (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)

제14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39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. 6. 16.
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센터 및 유관기관 대표자가 활동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가 활동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,
- 관련 용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체로 수정함

□ 주요골자

- 안 제8조제5항의 “실무위원회”를 각각 “실무협의체”로 수정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5항 중 “실무위원회” 를 각각 “실무협의체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시책 사업의 심의)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」 제7조에 따른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. 자살예방 상담·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4.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당연직 위원은 상록수보건소장, 단원보건소장, 복지업무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</p>	<p>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	<p><u>한다.</u></p> <p><u>1. 시의원</u></p> <p><u>2. 안산시자살예방센터</u> <u>장</u></p> <p><u>3. 안산시 관할 경찰</u> <u>서, 교육기관 등 담</u> <u>당자</u></p> <p><u>4. 의료 및 인권분야의</u> <u>전문지식과 경험이</u> <u>풍부한 사람</u></p> <p><u>5. 자살예방사업 추진</u> <u>기관 및 단체의 장</u></p>	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</u> <u>2년으로 하고, 한 번만</u>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</u> <u>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</u> <u>기를 두되, 간사는 담</u> <u>당업무 부서장이 되고</u> <u>서기는 담당팀장이 된</u> <u>다.</u></p>	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</u> <u>을 위하여 실무위원회</u> <u>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</u> <u>실무위원회의 구성 및</u> <u>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</u> <u>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<u>실무협의체</u> 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<u>실무협의체의 구성 및</u>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.</p>